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하향식 예·결산 심사 제도 도입〉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02호)

2024.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주요국의 하향식 예산 심사 사례	5
3. 개정안의 도입배경	11
4. 개정안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2
5. 개정안 도입에 따른 검토 사항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 · 이재관 · 박홍근 · 이정문 · 김원이 · 이기현
소병훈 · 김현정 · 이수진 · 김문수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8. 16.

3. 회 부 일 : 2024. 8. 19.

※ 의안번호 : 290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등 3단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예·결산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로 2단계 구조입니다. 이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문에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각 위원회 심사가 개별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 총량의 거시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예·결산 심사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

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4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예산 총량에 대한 거시적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안·결산 심사절차를 현행 2단계의 상향식 심사방식에서 3단계의 하향식(Top-down) 심사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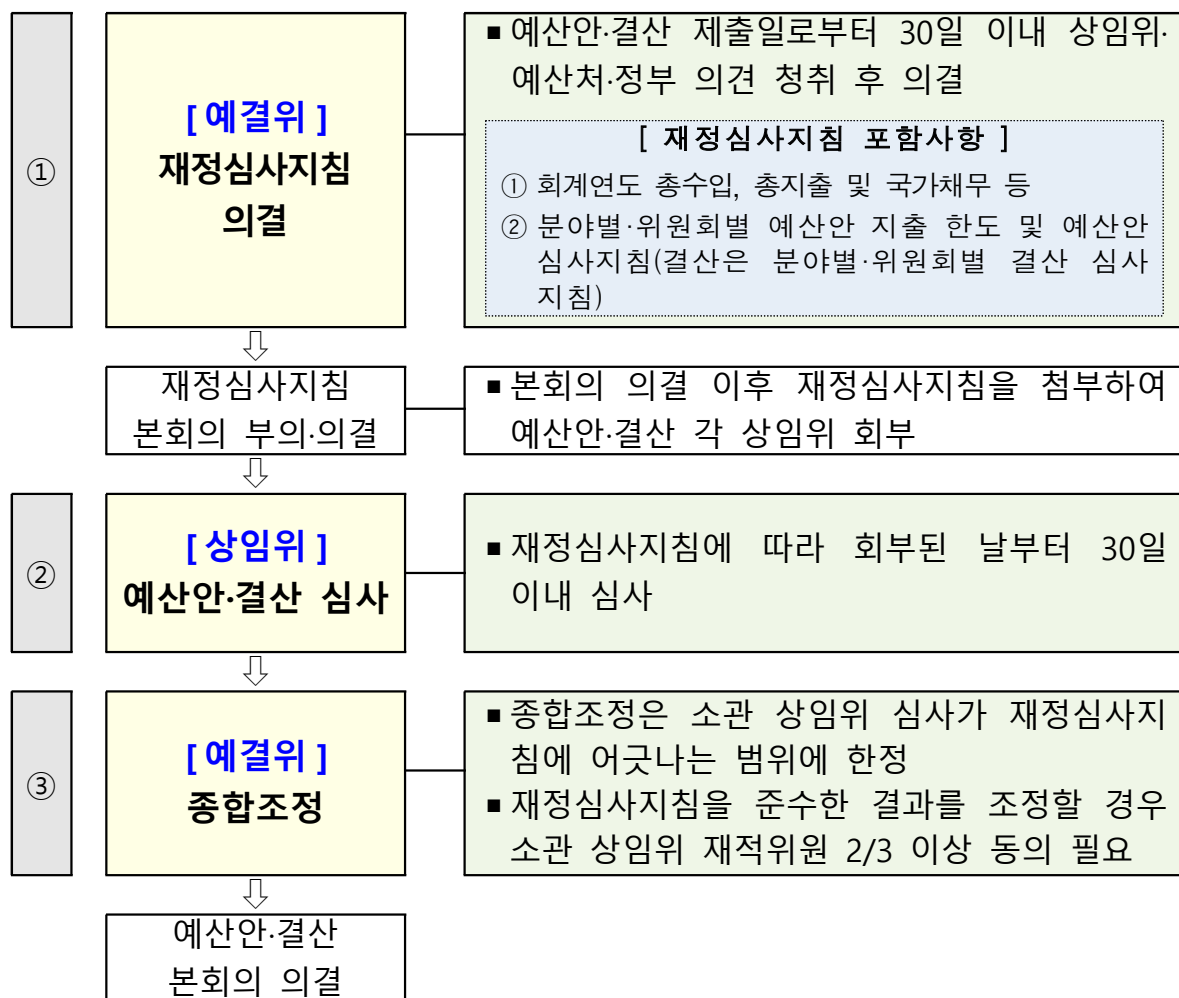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 2단계 심사 > ○ 예산안·결산 소관 상임위 회부 ① 상임위 예비심사 및 결과 보고 ② 예산안·결산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에 회부하여 심사 ※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예산안·결산 회부 시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가능 및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	< 3단계 심사 > ① 예결위는 예산안·결산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심사지침을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 ○ 재정심사지침 본회의 부의·의결 시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재정심사지침을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에 회부 ②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결산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심사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 ③ 예결위의 종합조정을 거쳐 이를 본회의에 부의 ※ 예결위의 종합조정은 소관 상임위 심사가 재정심사지침에 어긋나는 범위에 한정하고, 재정심사지침을 준수한 결과를 조정할 경우 소관 상임위 2/3 이상의 동의 필요

개정안은 ①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예산안·결산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연도 총수입, 총지출 및 분야별·위원회별 예산안 지출한도 등이 포함된 재정심사지침을 의결하고, 국회의장은 재정심사지침이 본회의에 부의·의결되면 예산안·결산에 이를 첨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에 회부함.

② 각 상임위는 예산안·결산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심사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예산안·결산에 각 상임위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에 회부함.

③ 예결위의 종합조정을 거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되, 예결위의 종합조정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가 재정심사지침에 어긋나는 범위에 한정하며, 재정심사지침을 준수한 결과를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

[그림-1] 개정안에 따른 예산안·결산 심사 방식



2. 주요국의 하향식 예산심사 사례1)

가. 미국

미국은 의회가 예산안 편성·확정권을 지닌 국가로, 미국 의회는 “예산위원회의 예산결의안 작성→수권위원회의 의무지출 심사, 세출위원회의 재량지출 심사→예산조정과정” 등의 하향식 예산심사 방식을 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2월경 대통령 예산안(the President's Budget)을 제출하는데, 이는 의회 예산 심의에 있어 참고사항에 불과함²⁾. 이후 ① 상·하원의 각 위원회는 대통령 예산안 제출 후 6주 이내에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추계 보고서³⁾’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함. ② 상·하원 예산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검토 및 추계보고서, 청문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합동예산결의안⁴⁾으로 채택⁵⁾함. 이러한 예산결의안에는 재정 전체의 세출규모, 세입규모 및 분야별 세출규모가 포함됨⁶⁾.

③ 예산결의안이 채택되면 6월 15일까지 각 수권(상임)위원회는 예산결의안에 따라 지출을 삭감하는 등 의무지출의 예산규모를 조정하

1) 해당 내용은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국회예산정책처, 2020. 6.) 및 『독일의 예산과정(연방의회 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국회사무처 독일주재관, 2022. 7.)을 참고하여 작성함.

2) 미국의 예산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임.

3) 검토 및 추계 보고서는 대통령 예산안에 대해 동의와 비동의 분야를 명시하면서 일부 사업들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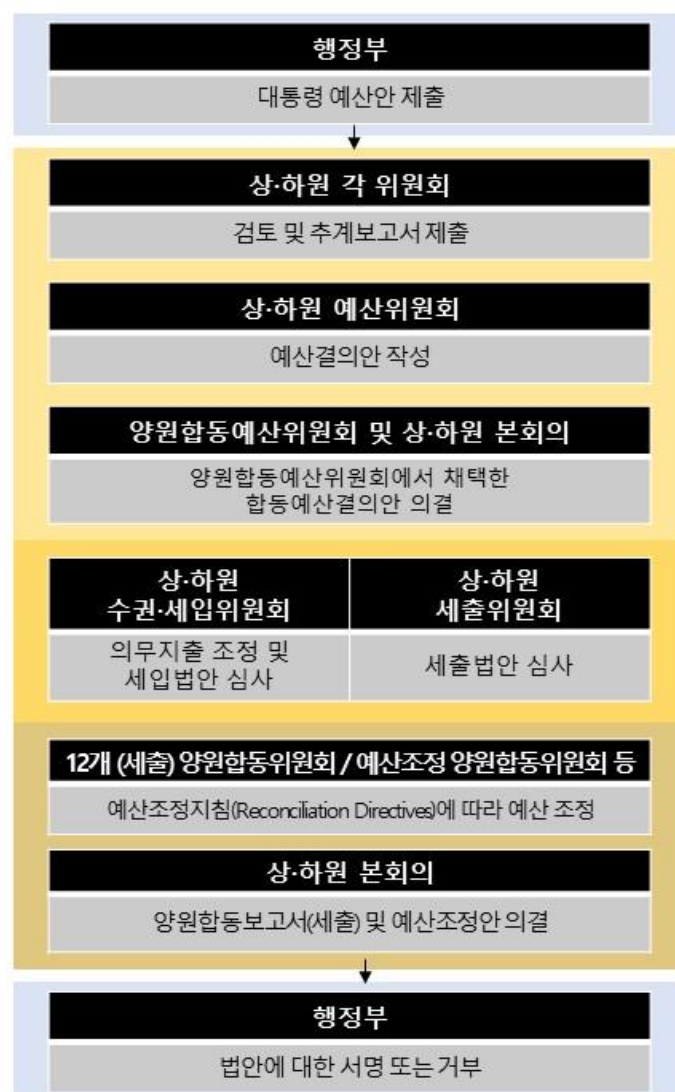
4) 예산결의안은 의회를 내부적으로 구속할 뿐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재량적 지출 상한 설정, 의무적 지출 축소 및 세법 개정 등 이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함.

5) 매년 4월 15일까지 상·하원 합동결의안을 채택하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채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함.

6) 임재주,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 2013.

고, 세출위원회는 세출법안 심사를 통해 예산규모를 조정함. 아울러 세입위원회는 세입법안을 심의·입법함. ④ 예산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산조정지침(Reconciliation Directives⁷⁾)에 따라 수권위원회, 세입위원회 및 세출위원회에서 예산결의안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예산조정과정을 진행한 이후 상·하원 의결을 거치게 됨.

[그림-2] 미국의 지출예산과정



7) 기존의 경직성 사업이나 세법을 수정하여 예산결의안에서 설정하는 목표에 따라 세입과 세출이 부합되도록 일부 위원회를 지정하여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지시사항

나. 스웨덴

내각제 국가인 스웨덴⁸⁾은 하향식 예산심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음.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춘계 재정정책안(4월 15일)⁹⁾과 본예산안(9월 20일)¹⁰⁾으로 구분됨. ① 우선 재무부는 매년 4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평가 및 향후 3~4년간의 경제성장 전망, 장기재정건정성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 춘계 재정정책안을 의회에 제출¹¹⁾함. ② 의회 재정위원회는 춘계재정정책안에 대해 정부안과 야당안, 각 상임위원회가 검토한 결과를 6월까지 심의·의결함.

③ 재무부는 9월 20일까지 본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함. ④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10월 말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정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총지출·분야별 자원배분·수입변화를 포함한 종합안을 제시하여 본회의에서 11월 20일까지 의결함. ⑤ 이후 각 소관 상임위원회는 이미 결정한 분야별 지출한도 내에서 분야별 지출을 조정하는 등 세부지출내역을 12월 중순까지 결정함.

8) 스웨덴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9) 춘계재정정책안은 경제·재정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의회에 제시하는 용도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평가, 향후 3~4년간의 경제성장 전망, 장기재정건정성에 대한 평가 등을 담고 있음.

10) 본예산안은 총지출 수준 및 27개 분야별 자원배분 및 분야 내 500여 개의 세부지출내역, 3년 후의 지출한도 등을 포함함.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춘계재정정책안에서 향후 3년간의 총지출한도 및 27개 분야별 지출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6월에 의결하는 방식이었으나 연 2회의 예산결정과정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의회가 가을에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는 방안이 제안되어 2002년 이후부터 춘계재정정책안에서 결정되던 3년 후의 지출한도가 9월의 예산안으로 이전되어 논의되는 등 춘계재정정책안의 역할이 변화되었다고 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사례」 2014. 2.).

[표-2] 스웨덴의 예산 과정

시기	행정부 (The Government)	의회 (The Riksdag)
1월~2월	• 전년도 경제전망 수정 및 보완 • 각 부처는 향후 3년간 지출추계 (Consequence Estimates) 작성 및 재무부 제출 • 재무부는 각 부처 지출추계 평가,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지출조정 또는 증세 등을 제안	
3월	• 각료회의(Government deliberations) 개최, 춘계재정정책안(the Spring Fiscal Policy Bill) 마련 - 경제 및 재정정책 가이드라인 합의 - 3월말부터 27개 분야에 대한 사전적 지출한도 마련	
4월	• 춘계재정정책안 및 추경예산안 (Supplementary budgets) 의회 제출 (4월 15일)	• 춘계재정정책안 심의
5~6월	• 본예산안(Regeringens Proposition) 편성 - 각 부처는 3월에 합의한 분야별 한도에서 개별 세부사업 예산제안서를 재무부에 제출 - 재무부는 경제전망을 재평가 • 정부 예산심의회의 개최	• 춘계재정정책안 심의(계속) • 춘계재정정책안 및 중앙정부 연간 보고서 의결(6월 중)
9월~12월	• 본예산안 의회 제출(9월 20일) - 총지출한도와 27개 분야별 지출 및 총 500여개의 세부사업내역 포함 - 당해연도 추경예산안 제출	• 본예산안 하향식 예산심의 - 재정위원회 본회의(the Chamber)에서 총지출한도, 27개 분야별 지출한도에 대한 종합안 의결 (11월 말) • 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안 (Shadow budget)¹²⁾ 제시 • 정부 예산안 최종 승인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의 재정제도(2020)』

12) 스웨덴 야당은 일반의원 발의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대 지출한도와 분야별 예산배분에 대한 의견, 세제 및 부담금에 대한 변경 제안을 제출하며, 이를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이라 칭한다.

다.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도 하향식 예산심사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프랑스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 대통령이 늦어도 10월 첫째 주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는 이를 2차로 나누어 심의함. 구체적으로, 1차 심의(55일~60일)에서 재정수지, 세입 및 세출의 상한을 조정하고, 2차 심의에서는 상한 한도의 관점에서 예산배분에 대해 심의를 진행함.

라. 독일

독일의 예산과정은 “예산안 수립→예산법률 의결→예산 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하향식 예산심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연방재무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각 부처가 이를 바탕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연방재무부에 제출함. ② 연방재무부와 각 부처는 예산안에 중기경제전망 및 중기세수추계를 반영하고 장관급조정 등을 실시하는데, 장관급조정에는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함. ③ 연방내각은 예산법률초안,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8월에 연방 상·하원에 제출함.

④ 9월부터 연방정부가 제출한 예산법률초안,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연방 상·하원의 심의가 시작됨. 다만, 예산법률은 ‘동의법률(Zustimmungsgesetz)’¹³⁾이 아닌 단지 이의제기만을 할 수 있는 ‘이의

13) 동의법률 3가지 유형: ① 기본법을 변경하는 법률(연방하원 및 연방상원 2/3다수결 필요) ② 연방주 재정에 심각한

법률(Einspruchsgesetz)¹⁴⁾에 해당하므로, 연방상원이 예산 확정에 참여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음. ⑤ 연방하원의 본회의 3독회를 거쳐 통과한 예산법률안이 연방상원에서 확정되면 연방대통령이 비준·공포함으로써 예산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표-3] 독일의 예산과정

일정		예산과정
n-1년	12월	연방재무부는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
n년	2~3월	각 부처가 연방재무부에 예산요구서 제출, 연방재무부는 거시지표전망 등을 토대로 Top-down 방식으로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작성
	3월	연방내각회의에서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4~5월	연방재무부와 부처 간 예산안 실무조정(중기경제전망 및 중기세수추계 반영)
	5~6월	예산안 장관급 조정(연방의회 예산위원회 위원 및 연방회계감사원 감사위원 참여)
	6월말	연방내각은 예산법률초안,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확정결
	8월	예산법률초안,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연방 상·하원에 제출
	9~12월	• 연방상·하원 1차 심의 및 연방하원 예산위원회 심의 시작(9월) • 연방하원 예산위원회 최종심의, 연방하원 2·3차 심의(11월) • 연방상원 2차 심의(12월)
	12월	연방하원을 통과한 예산법률안이 연방상원에서 확정 연방재무부장관 및 연방총리 서명 후 연방대통령 비준하고 공포

자료 : 국회사무처 독일주재관, 독일의 예산과정(연방의회 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2022.

영향을 미치는 법률 ③ 법률의 실행을 위해 주 행정관청의 설치 및 행정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
14) 동의법률을 제외한 모든 법률은 이의법률에 해당함.

3. 개정안의 도입배경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예산 및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¹⁵⁾를 구성·운영하였음. 동 특별위원회는 일곱 차례의 전체회의 및 세 차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권을 보다 실질화하고 예산안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결위의 상임위화’와 현행 2단계의 심사방식을 3단계의 하향식 심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건의를 하였음.

또한, 제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를 주제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2022. 9. 15.), 공청회 당시 예산안 편성과 심사 과정의 비정합성과 예결위·상임위 역할 중복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은 하향식 예산심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논의되었음.

예산안·결산의 하향식 심사방식 도입 필요성은 과거부터 지적된 것으로,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하향식 심사방식 전환에 따른 여러 장점들이 제시되었음. 다만, 하향식 심사방식은 현행의 예산안·결산 심사방식을 전면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산 심사 제도 외에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개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5) ○ 구성목적 :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심사의 투명성 확보와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등 예산 및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재정 부담 및 지역 간 불균형 심화문제 해결과 공공기관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논의

○ 활동기간 : 2013. 3. 22. ~ 9. 30.

○ 위원 수 : 18인(새누리당 9인, 민주당 8인, 비교섭단체 1인)

4. 개정안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첫째,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의 국가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거시적 자원배분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를 2005년에 도입하였으나, 예산안 편성 이후에 진행되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개별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¹⁶⁾

또한, 중기적 관점(5년 시계)에서 수립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부터 각 해의 예산안이 파생되어야 하나 일관성 없이 매년 수정을 거듭하여 재정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그 원인으로 국회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받는 데 그칠 뿐 이에 대한 심의가 부재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음.¹⁷⁾

개정안과 같이 하향식 심사방식을 도입할 경우 예결위에서 총수입, 총지출 및 국가채무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결정하고 상임위는 이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므로, 국회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실질적 심의와 예산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총괄적인 심의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16) 정창수, 「국회 예산심의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연구), 2017. 10.

17) 정창수, 「국회 예산심의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연구), 2017. 10.

둘째, 예결위·상임위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가능해짐.

현재 상임위와 예결위 모두 개별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어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국회법」은 예결위로 하여금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¹⁸⁾하도록 할 뿐 구속력은 없어, 상임위가 예비심사 단계에서 증액하더라도 예결위 심사 시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임. 이로 인해 예산안 심사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음¹⁹⁾.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하향식 심사방식을 도입할 경우 상임위는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예산 증액 관행이 개선되는 한편 예결위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상임위와 예결위 간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해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18)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9) 이에 대해 상임위 예비심사의 의의는 예결위 심사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결위에서 상임위 심사 내용이 빈번히 수정되니 상임위 예비심사는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견해가 있음(하종범, 「국회의 예산심사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5. 8.)

5. 개정안 도입에 따른 검토 사항

첫째, 예결위의 원활한 재정심사지침 작성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관련 자료를 보다 조기에 제출받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데, 예결위가 30일 안에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을 함께 심의하여 재정심사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음.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의 제출 시기를 당기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만이라도 먼저 제출받아 재정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예결위가 예산안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심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의 상임위화(전임)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법」은 예결위를 상설특별위원회의 형태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예결위원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²⁰⁾ 예결위원은 다른 상임위원을 겸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예결위 구성·운영방식으로는 연중 예·결산 모니터링 등 재정심사지침 마련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예결위원의 타 상임위 겸임 금지, 예결위원 임기 보장, 전문성 있는 예결위원 보임 등 예결위 전임 상임위화를

20)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앞서 설명한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위한 정책 건의의 일환으로 하향식 심사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으며, 개정안과 유사하게 하향식 심사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69호)에서도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음.

셋째, 하향식 심사방식이 원활하게 도입·시행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정기회 이전에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예결위는 정부의 예산안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심사지침을 의결하여야 하고, 재정심사지침이 본회의에 부의·의결되어 예산안과 함께 상임위로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임위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²¹⁾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기회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 기간과 국정감사가 중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어 보임.

넷째,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심사지침이 예결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2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경우에는 상임위의 예·결산 심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예산안·결산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정심사지침을 의결하면 의장이 예산안·결산을 상임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결위에서 재정심사지침을 의결하지 못하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경우에 대한 후속절차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재정심사지침은 총지출 수준 및 각 분야별 지출한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기한 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예산안과 결산 심사 모두 하향식 심사방식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재원을 분야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야 하는 예산안과 달리 결산은 이미 집행된 내역을 회고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이므로 재정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 심사하도록 할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은 정보위원회 소관의 기밀성을 고려하여 예결위에서 정보위원회의 예산안·결산 심사결과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²²⁾, 개정안과 같이 하향식 예산안 심사방식으로 전환한 후에도 해당 특례를 유지할 것이라면 안 제84조제6항의 인용조문을 수정²³⁾할 필요가

22)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23) 「국회법 개정안」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및 정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심사지침을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015

1. 회계연도 총수입, 총지출 및 국가채무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분야별·위원회별 예산안 지출 한도 및 예산안 심사지침(결산의 경우 분야별·위원회별 결산 심사지침을 말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재정심사지침을 보고한 경우 지체 없이 재정심사지침을 본회의에 부의하며, 재정심사지침이 의결된 경우 예산안과 결산에 재정심사지침을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③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재정심사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예산안에 제3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조정을 거친 후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조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재정심사지침에 어긋나는 범위에 한정하며, 재정심사지침을 준수한 결과를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제4항으로 수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